

「행정절차법 제4장」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99년 1월 15일
- 개 정 일: 2015년 12월 11일
- 공 포 일: 2015년 12월 30일
- 시 행 일: 2015년 12월 30일

원문 ¹	번역문
<p>第四章 法規命令及行政規則</p> <p>第一百五條 (法規命令之定義)</p> <p>本法所稱法規命令，係指行政機關基於法律授權，對多數不特定人民就一般事項所作抽象之對外發生法律效果之規定。</p>	<p>제4장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p> <p>제150조 (법규명령의 정의)</p> <p>이 법에서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기초하여 부여 받은 하나의 권한이며, 불특정 다수의 인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을 통하여 대외적인 법</p>

¹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法規命令之內容應明列其法律授權之依據，並不得逾越法律授權之範圍與立法精神。

第一百五十一條（法規命令程序之適用範圍）

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除關於軍事、外交或其他重大事項而涉及國家機密或安全者外，應依本法所定程序為之。但法律另有規定者，從其規定。

法規命令之修正、廢止、停止或恢復適用，準用訂定程序之規定。

第一百五十二條（法規命令之提

규범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인 규정을 말한다.

법규명령의 내용은 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와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제151조（법규명령 절차의 적용 범위）

국방·외교·그 밖에 국가기밀·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법규명령의 개정·폐지·중지·회복은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52조（법규명령의 입안）

<p>議)</p> <p>法規命令之訂定，除由行政機關自行草擬者外，並得由人民或團體提議為之。</p> <p>前項提議，應以書面敘明法規命令訂定之目的、依據及理由，並附具相關資料。</p> <p>第一百五十三條（法規命令提議之處理原則）</p> <p>受理前條提議之行政機關，應依下列情形分別處理：</p> <p>一、非主管之事項，依第十七條之規定予以移送。</p> <p>二、依法不得以法規命令規定之事項，附述理由通知原提議者。</p> <p>三、無須訂定法規命令之事</p>	<p>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규명령의 초안은 인민 또는 단체가 작성할 수 있다.</p> <p>앞 항의 초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근거·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p> <p>제153조（법규명령 입안의 처리 원칙）</p> <p>제152조의 법규명령 입안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문서를 다음 각 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접수한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으로 이송한다. 2. 법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 3.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
--	--

<p>項，附述理由通知原提議者。</p> <p>四、有訂定法規命令之必要者，著手研擬草案。</p> <p>第一百五十四條（法規命令之預告程序）</p> <p>行政機關擬訂法規命令時，除情況急迫，顯然無法事先公告周知者外，應於政府公報或新聞紙公告，載明下列事項：</p> <p>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各該機關名稱。</p> <p>二、訂定之依據。</p> <p>三、草案全文或其主要內容。</p>	<p>요가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p> <p>4.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초안을 연구하여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따른다.</p> <p>제154조（법규명령의 예고 절차）</p> <p>긴급한 사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규명령 초안을 입안하는 때에 공보·신문에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칭</p> <p>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p> <p>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주요 내용</p> <p>4. 상당한 기간 안에 지정된 기</p>
---	--

<p>四、任何人得於所定期間內向指定機關陳述意見之意旨。</p> <p>行政機關除為前項之公告外，並得以適當之方法，將公告內容廣泛周知。</p> <p>第一百五十五條（行政機關得依職權舉行聽證）</p> <p>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得依職權舉行聽證。</p> <p>第一百五十六條（聽證前應行預告之事項及內容）</p> <p>行政機關為訂定法規命令，依法舉行聽證者，應於政府公報或新聞紙公告，載明下列事項：</p> <p>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p>	<p>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p> <p>행정기관은 앞 항의 공고를 하는 동시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의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p> <p>제155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p> <p>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다.</p> <p>제156조（청문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내용）</p> <p>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공보·신문에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p> <p>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p>
---	---

<p>各該機關之名稱。</p> <p>二、訂定之依據。</p> <p>三、草案之全文或其主要内容。</p> <p>四、聽證之日期及場所。</p> <p>五、聽證之主要程序。</p> <p>第一百五十七條 (法規命令之發布)</p> <p>法規命令依法應經上級機關核定者，應於核定後始得發布。</p> <p>數機關會同訂定之法規命令，依法應經上級機關或共同上級機關核定者，應於核定後始得會銜發布。</p> <p>法規命令之發布，應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p>	<p>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 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주요 내용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5. 청문의 주요 절차 <p>제157조 (법규명령의 공포)</p> <p>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에 공포하여야 한다.</p> <p>소관으로 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공동의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해당 법규명령 문서에 소관 기관들이 연달아 서명하고 공포한다.</p> <p>법규명령은 공보·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p> <p>제158조 (법규명령이 무효가 되</p>
--	---

第一百五十八條 (法規命令無效之事由及一部無效之處理原則)

法規命令，有下列情形之一者，無效：

- 一、牴觸憲法、法律或上級機關之命令者。
- 二、無法律之授權而剝奪或限制人民之自由、權利者。
- 三、其訂定依法應經其他機關核准，而未經核准者。

法規命令之一部分無效者，其他部分仍為有效。但除去該無效部分，法規命令顯失規範目的者，全部無效。

第一百五十九條 (行政規則之定義)

는 사유 및 법규명령이 일부 무효인 경우 처리 원칙)

법규명령이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1. 헌법·법률·상급기관의 명령에 저촉하는 내용인 경우
2. 법률에서 인민의 자유·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다른 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법규명령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다만, 해당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규명령 전부를 무효로 한다.

제159조 (행정규칙의 정의)

이 법에서 "행정규칙"이란 행

本法所稱行政規則，係指上級機關對下級機關，或長官對屬官，依其權限或職權為規範機關內部秩序及運作，所為非直接對外發生法規範效力之一般、抽象之規定。

行政規則包括下列各款之規定：

- 一、關於機關內部之組織、事務之分配、業務處理方式、人事管理等一般性規定。
- 二、為協助下級機關或屬官統一解釋法令、認定事實、及行使裁量權，而訂頒之解釋性規定及裁量基準。

정기관의 내부질서 확립 및 운영을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규율하거나 행정기관의 장(長)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권한·직권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며, 대외적인 법규범 효력을 직접적으로는 갖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행정규칙은 다음 각 관의 규정을 포함한다.

1. 기관 내부의 조직·사무의 배분·업무처리의 방식·인사 관리 등의 일반 규정
2. 하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법령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해석 관련 규정 및 재량권의 기준

제160조 (행정규칙의 전달 및 공

第一百六十條（行政規則之下達與發布）

行政規則應下達下級機關或屬官。

行政機關訂定前條第二項第二款之行政規則，應由其首長簽署，並登載於政府公報發布之。

第一百六十一條（行政規則之效力）

有效下達之行政規則，具有拘束訂定機關、其下級機關及屬官之效力。

第一百六十二條（行政規則之廢止）

行政規則得由原發布機關廢止

포)

행정규칙은 하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159조제2항제2관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 장(長)의 서명을 받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제161조 (행정규칙의 효력)

하급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전달된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기관·그 하급기관·그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제162조 (행정규칙의 폐지)

행정규칙은 기존의 행정규칙을 공포한 기관이 폐지할 수 있다.

<p>之。 行政規則之廢止，適用第一百六十條規定。</p>	<p>행정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제 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규칙을 폐지한다.</p>
-----------------------------------	--